

환 경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사천시, 합천군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¹⁸⁹⁾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사천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미이행

사천시 ○○○○국 ○○○○과(구 ○○사업소)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설을 통한 우수율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높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서비스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사천시 ○○○망 선진화사업”(총사업비 10,261백만원, 국고 2,953백만원)을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

189)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 추진하였으며

2015. 12. 31.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 3. 31.까지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하여 작성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28일을 지연하여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상수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잔액>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완료일)	실적보고서 제출일	지연일수	교부금액 (백만원)	집행잔액 (백만원)	감사시 지적사항
사천시 ○○○망 선진화사업	2010.1.~ 2015.12. (2015.12.31.)	미제출	228일	2,953	확인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여 보조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함

2. 합천군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미이행

합천군 ○○○○사업소는 ○○면, ○○면 일원에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사업비 6,047백만원, 국고 4,233백만원)을 2011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015. 12. 15. 실질적인 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2016. 3. 15.까지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하여 작성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45일을 지연하여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상수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잔액>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완료일)	실적보고서 제출일	지연일수	교부금액 (백만원)	집행잔액 (백만원)	감사시 지적사항
○○,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11.2.~ 2016.2. (2015.12.15)	미제출	245일	4,233	확인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여 보조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 합천군수는

상수도 개발사업의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정산하여 확정·반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